

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허가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활동정지처분으로 감경(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최근 5년간 남극활동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라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
- 마) 그 밖에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1호	취소		
나.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법 제12조제1항제2호	취소		

당하게 되는 경우				
다.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		
1) 남극활동 참가자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1개월	활동정지 3개월	취 소
2) 남극활동 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1개월	활동정지 3개월	취 소
3) 남극활동 경로를 현저히 이탈한 경우 (50퍼센트 이상 이탈한 경우만 해당한다)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1개월	활동정지 3개월	취 소
4) 승인을 받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·활동하거나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6개월	취 소	
5) 승인지역 외의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·활동하거나 승인지역 외의 지역에서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3개월	활동정지 6개월	취 소
6) 승인된 수량보다 많은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6개월	취 소	
7) 승인된 종류 외의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을 하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6개월	취 소	
8) 승인조건 외의 남극토착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포획 등을 하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3호	활동정지 3개월	활동정지 6개월	취 소
라.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4호			
1)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4호	활동정지 3개월	활동정지 6개월	취 소
2)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4호	활동정지 1개월	활동정지 3개월	취 소